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31
----------	-------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황운하 · 신장식 · 박은정  
강경숙 · 정준호 · 이해민  
윤종오 · 정혜경 · 김재원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모든 선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등 행정적 사유로 인하여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일 당일 예상치를 초과하는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거나 선거인 수 산정 및 투표율 예측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용지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즉시 보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선거별 수요 예측에 따라 확보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장시

간 대기하거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에도 추가로 투표용지를 작성·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인 수와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예비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권 침해를 예방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151조 제1항 단서 신설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에도 추가 투표용지를 작성·송부할 수 있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수, 직전 동종 선거의 투표율 및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투표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수량은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비 투표용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⑨ (생략)

③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